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준오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364
----------	------

발 의 년 월 일: 2025년 02월 03일

발 의 자: 서준오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고광민, 김 경, 김성준, 김영철, 김태수, 김현기, 남창진, 박승진, 봉양순, 송재혁, 옥재은, 왕정순, 유정인, 유정희, 이상훈, 이영실, 이용균, 이원형, 이종태, 허 훈 의원(21명)

1. 제안이유

- 서울시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 과정의 전문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정비사업 전문인력인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제도’를 2011년 12월부터 운영하고 있음
- 그러나 법적 근거 없이 시장 방침으로만 운영하고 있어, ‘정비사업 전문인력’을 본 조례에 명시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공공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시장의 정비사업 전문인력 구성 및 파견, 정비사업 전문인력의 수행 업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75조의2 신설)

3. 참고사항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 다. 기타 : 신 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5조의2(정비사업 전문인력 파견) ① 시장은 정비사업의 전문적 지식을 갖춘 정비사업 전문가로 정비사업 전문인력을 구성한다.

② 시장은 공공지원자의 요청이 있거나 긴급하게 조합의 운영, 갈등 조정 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 정비사업 전문인력을 파견할 수 있다.

③ 정비사업 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비사업 인·허가 상담 및 지원
2. 정비사업에 대한 설명 및 제도 홍보
3. 정비사업 갈등에 대한 조정 및 중재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정비사업 전문인력의 구성 및 파견 절차에 관한 사항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75조의2(정비사업 전문인력 파견)</u> <u>① 시장은 정비사업의 전문적 지식을 갖춘 정비사업 전문가로 정비사업 전문인력을 구성한다.</u> <u>② 시장은 공공지원자의 요청이 있거나 긴급하게 조합의 운영, 갈등 조정 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 정비사업 전문인력을 파견할 수 있다.</u> <u>③ 정비사업 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u> <u>1. 정비사업 인·허가 상담 및 지원</u> <u>2. 정비사업에 대한 설명 및 제도 홍보</u> <u>3. 정비사업 갈등에 대한 조정 및 중재 지원</u> <u>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 <u>④ 정비사업 전문인력의 구성 및 파견 절차에 관한 사항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u>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 과정의 전문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정비사업 전문인력인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제도'를 서울시에서 2011년 12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 없이 시장 방침으로만 운영하고 있어, '정비사업 전문인력'을 조례에 명시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공공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도의 비용을 수반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주 병 준

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

추 계 분 석 관 김 진 형

☎ 02-2180-7954

e-mail : kjh0816@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